

Chubb 국내여행실손의료보험 B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의 종류 : 특종-상해/여행
2. 보험종목의 명칭 : Chubb 국내여행실손의료보험 B
3. 보험의 목적
 - 1) 피보험자의 신체
 - 2)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각종 비용손해
4. 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주기에 관한 사항
 - 1) 보험기간 : 보험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장기계약 또는 1개월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2) 보험료 납입주기 :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료 영수증과 상환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다.
5. 배당에 관한 사항 :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6.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 1)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 2) 실손의료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 (1) 적용대상(단체계약 제외)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청약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2) 보험료 할인

회사는 피보험자가 수급권자 자격취득일(수급권자 자격취득일이 계약일 이전이면 계약일)로부터 영업보험료의 10%를 할인하여 영수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사는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은 영업보험료를 적용한다.
7. 기타
 - 1) 이 보험은 보험업법 제91조에 정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를 통한 계약에 한정한다.
 - 2) 실손의료비 판매제한에 관한 사항
 -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의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최고 한도는 아래와 같으며,

보장종목별로 분리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해급여형과 상해비급여형, 질병급여형과 질병비급여형은 함께 판매한다.

구 분	보험종목		보험가입금액 한도
기본형	상해급여		5천만원 이내
	질병급여		5천만원 이내
특약형	상해비급여		5천만원 이내
	질병비급여		5천만원 이내
	3대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350만원 이내
		주사료	250만원 이내
		자기공명영상진단	300만원 이내

3) 모집수수료 최고 지급률 : 100%

(근거 : 보험업감독규정 제7-71조 관련 [별표17]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을 통하여 모집하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4)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1)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

-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 ②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2) 기타

- ①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

Chubb. Insured.SM